

『공유재산 사용허가 [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] 동의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이종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-6, 448-4에 수소충전소를
구축하고자 함에 따라,
-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
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에 의거 미리
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- (1) 지번(목) :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447-6(답), 448-4(답)
- (2) 사용면적 : 대상면적 637m²

○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

- (1) 사업내용 :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
- (2) 사업기간 : 최초 10년, 1회 연장 10년(총 사업기간 20년)
- (3) 사 업 비 : 75억원(국비 42억, 민간 33억)
- (4) 사업규모 : 수소충전소 충전용량 120kg/hr, 디스펜서 2기
상용(버스/트럭) 6대/시간, 승용 24대/시간

○ 사용허가의 필요성

- (1)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차량 전환 가속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
미세먼지 저감,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
위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
- (2)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성과
접근성 제고

○ 추진실적

한국자동차환경협회(환경부 역무대행) 주관 '22년 수소전기자동차
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수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1조의3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공유재산 사용허가 [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] 동의안」 은,

-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-6(답), 448-4(답) 총 면적 637㎡에 영구시설물(액화 수소충전소) 축조를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환경부 주관 민간사업자 공모로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75억원(국비 42억, 민간 33억)으로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이 설치되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영구시설물(액화 수소충전소) 축조를 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